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 월 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동일 읍·면·동 내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이행 가능성 등 판단을 위해 허가권자가 변경허가에 준해 판단하고 있으며, 발전사업 허가 이후 전력계통 연계점 변경 요청시 허가권자가 관계 전문기관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변경허가 사항에 이를 추가하고자 함.

발전사업 허가신청시 신청자가 전력계통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허가권자가 관계 전문기관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심사에 반영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 읍·면·동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 중 허가 심사기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계통 연계점을 전기사업 변경허가 대상 추가(안 제5조제3호)

나. 발전사업 허가시 전력계통 검토 절차 명확화(안 제7조제5항)

- 1) 전력계통의 연계계획에 대한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의 의견을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으로 명시함(안 제7조제5항)
- 2)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에서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 삭제(별표1의2 제3호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심사기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력계통 연계점

제7조제4항 중 “중복되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법 제7조제5항제4의2호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에 대한 심사는 별표 1 제1호사목의 전력계통의 연계계획에 대한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의 의견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 ----- -----
가. 설치장소(동일한 읍·면·동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u>제외한다</u>)	가. ----- ----- ----- <u>제외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심사기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u>)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마. 전력계통 연계점</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 ③ (생략)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	④ ----- -----

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u>중복되는지에 대한 심사 기준은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으로 한다.</u> <u><신 설></u>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 ---- <u>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한</u> <u>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u> <u>을 기준</u>----- -----. ⑤ 법 제7조제5항제4의2호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에 대한 심사는 <u>별표 1 제1호사목의 전력계통의 연계계획에 대한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의 의견을 기준으로 한다.</u> ⑥ ----- ---- <u>제5항</u>----- ----- ----.
---	---

제 호

(발전, 구역전기) 사업허가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 호:
3. 소 재 지:
4. 사업의 내용:
사업장소:
5. 사업규모
 - 원동력의 종류:
 - 설비용량: MW, 공급전압: kV, 주파수: Hz
 - 연 계 점:
6. 특정공급구역:
7. 사업준비기간:
8. 허가조건:
9. 기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발전·구역전기 사업의 허가에 사용됩니다
2. 발전사업은 6번란을 적지 않습니다
3. 6번란, 8번란 및 9번란에 적는 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구비서류
1. 재무능력 관련	가.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의 의견서. 다만,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 나.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
2. 기술능력 관련	가.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서류
3. 계획에 따른 수행 가능 여부 관련	가. 발전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발전설비와 접속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발전설비용량이 1만 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풍력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발전설비용량이 10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 나. 삭제 다. 송전관계 일람도(一覽圖) 라.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마.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명서류(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 실적 사.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 산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 그 밖의 사항 관련	가.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발전원가명세서(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의 허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

	서의 사본(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허가 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말한다)
--	---

비고

1.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초과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2호가목, 제3호다목,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서류만 제출한다.
2.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4호나목에 따른 서류만 제출하며,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구역전기사업의 허가 외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